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대행 동의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호	3208
-----------	------

2022년 6월 14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서울특별시

나. 제안일자 : 2022년 5월 25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5월 27일

라. 상정일자

○ 제308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2022년 6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교통실장 백호)

가. 제안이유

- 서울시 강동구 암사1동 주차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어 무상 사용기간(20년)이 종료('22.5월)됨에 따라 우리시로 반환되는 주차장임
- 전문적인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서울시설공단에 주차장 관리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개요 >

- 주차장명 : 암사1동 주차장
- 주 소 지 : 강동구 암사1동 473-3(고덕로 24길 50)
 - ※ 민자운영기간 : 2002.5.16.~2022.5.15.(20년)
- 시설규모 : 대지 995.4㎡, 연면적 3,385.27㎡(주차장 2,694.72/근생 690.55)
 - 주차구획 100면, 부대시설 2개소
- 주차요금(예정) : 130원 / 5분당, 월정기권 90,000원(3급지)



< 주요 대행 업무 >

- 대행기관 : 서울시설공단
- 대행기간 : 4년7개월('22.5.16. ~ '26.12.31.)
 - ※ '21.12.31. 체결한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협약서 적용('22.1.1.~'26.12.31)
- 대행업무
 - 암사1동 공영주차장과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 주차장 및 부대시설의 안전관리, 유지관리 및 개보수

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신월4동 공영주차장은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수익추구 보다 시민들의 주차편의 등 공공기능 강화가 필요한 시설임
- 서울시설공단은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신월4동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대행함으로써, 축적된 전문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 운영과 안전한 시설물 관리로 이용 활성화가 가능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0조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 제2항 및 제13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4. 전통시장인근 100m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0면 이하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 ② ~ ③ 생략

○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19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와 청소·경비·일상적 시설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22년 예산 반영

다. 합 의 : 해당 없음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동의안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BTO1)) “암사1동 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02.5.16~'22.5.15)이 종료됨에 따라 동 주차장의 운영·관리 등 관련 업무를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대행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참고 :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규정

제19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와 청소·경비·일상적 시설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20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① 민간투자사업은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나. 검토의견

■ 암사1동 주차장 시설 및 운영현황

- 암사1동 주차장은 ‘강동구 암사1동 473-3(고덕로 24길 50)’에 위치한 지상4층 5단 규모의 자주식주차장²⁾(주차면수 100면)으로 지하1층과 지상 1층에 근린생활시설 2개소(홈플러스, 탁구장)가 입점되어 있고

부속시설을 포함한 연면적은 3,358^{m²}이며, 1일 평균 점유율은 59% 수준³⁾의 이용빈도를 나타내고 있음

※ 참고 : 암사1동 주차장 시설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위치		강동구 암사1동 473-3		
주무관청		서울특별시		
사업규모	대지면적	995.40 ^{m²}	층수	주차장 지상4층 5단 부속시설 지하 1층, 지상1층
	연면적	3,385.27 ^{m²}		
	건축높이	15.05m	내용	주차장 100면(자주식) 부속시설 근린생활시설 2개소
용도지역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사업시행자		(주)에이제이파크 *2015년 (주)새서울주차장으로부터 양도		
무상사용기간		2002.5.16 ~ 2022.5.15		
총사업비		17.9억 원		

위치도	건물배치도

2) 자동차의 입출구에 있어서 기계를 쓰지 않고 운전자 스스로가 이동하여 주차시키는 방식의 주차 시설.
 3) 암사1동 주차장 민간투자사업 운영종료에 따른 관리이행계획 수립(시설운영현황)

■ 무상 사용기한('22.5.15) 종료 후 운영 방안

- 암사1동 주차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민자주차장으로 '99년 기본계획 고시 및 실시협약 체결⁴⁾ 후 '02년 5월 준공되어 20년간 ('02.5.16.~'22.5.15)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운영 한 바 있음
- 협약에 따른 사용기한 종료 후 동 주차장의 관리주체가 서울시로 인계되기 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⁵⁾과 관련지침⁶⁾에서 시설의 지속여부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관리이행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공공투자센터를 통해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한 결과⁷⁾ 지역의 주차 수요 대비 공급 수준은 여유있는 상황이나 장래 불법주차 전환수요와 주차시설 폐지 시 주차장 공급을 위한 대안이 부재한 점을 감안할 때 현재와 동일한 주차공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동

4) 암사1동 주차장 사업추진 경위

- 용산2가 1-1606외 19개소 주차장 건설사업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1999.01.29.)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1999.09.16.)
- 양도·양수 계약 및 관리운영권 이관(㈜새서울주차장 → (주)에이케이파크)(2015.05.15.)

5)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공고 등)① 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 하고, 이를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4조의2(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되는 사업의 추진방식 및 관리이행계획 수립 등) ② 주무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3년 전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당 시설의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당 사회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
2. 제1항 각 호의 방식 중 어느 방식이 가장 적합한지 여부

7) 반포천 복개 주차장 등 7개소 민간투자사업(BTO) 운영종료에 따른 관리이행계획 수립 용역

- 과업대상 : 반포천 복개, 신월3동, 장안1동, 신월4동, **암사1동**, 면목2동, 구로동
- 용역기간 : '19.10.18~'20.12.17(용역비 : 421백만원)
- 용역사 : **서울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주차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 대행 동의에 대한 검토의견

1) 대행사업 대상 여부 관련

- 대행사업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1조8)에 따라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권한을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되 명목과 책임은 원래 권한자인 행정기관에 귀속되도록 하는 것⁹⁾으로

서울시는 2016년 6월 시행 중인 민간위탁 사업 중 민간 경쟁자가 없고 도시 인프라 관리 등 도시공공성을 추구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아닌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단의 경우 공영주차장 관리 등 민간위탁하고 있는 23개 사무를 대행사업으로 전환한 바 있음¹⁰⁾

8)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9) “법령일안·심사기준” 8.행정업무의 대행(2017.12)

10) 민간위탁 혁신계획(조직담당관-8252, 2016.6.30.) 「민간위탁과 대행의 구분으로 운영 효율화」

- 시설공단 사무를 성격별로 위탁과 대행으로 재분류하기 위해, 서울시 주관부서 의견수렴 결과, **23개 사무 전체를 대행사업으로 전환 결정**

- '17.1월 이후 신규사무는 다음 기준에 따라 사업추진방식 결정(사업부서)

- 위 탁 : 민간 참여로 경쟁이 가능한 사무, 경제성·효율성 추구 사무
- 대 행 : 민간 경쟁자가 없거나 보안, 도시 인프라 관리 등 공공성 추구 사무

※ 참고 : 민간위탁, 대행사업 특징 비교

구분	민간위탁	대행사업
개념	• 수탁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책임으로 사무를 수행함	• 위탁기관의 권한이 법적으로 수탁 기관으로 이전되지 않음
수탁자	• 법인, 단체, 개인	• 법인 • 지방공기업법 제71조 • 지방출자출연법 제21조
권한책임	• 이전	• 이전되지 않음
의회동의	• 시의회 동의(보고) (신규, 재위탁·재계약시)	• 시의회 의결 (신규·해지시)

- 따라서, 현재 공단이 서울시 공영주차장을 일괄 운영 중이고 민간 위탁사업으로 추진된 민자주차장 20개소 중 위탁기간이 만료된 주차장 12개소도 공단이 대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동 동의안을 통해 공단이 암사1동 주차장의 운영을 대행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2) 관리이행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시 검토사항

- 암사1동 주차장의 관리이행계획¹¹⁾에 따르면 동 주차장은 별도의 투자를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차장의 공급규모를 늘리지 않고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서울시가 관리이행계획의 결과에 따라 현재 시설수준을 유지한 채 공단이 주차장 운영을 대행하게 할 경우 서울시는 현 운영 사업자와의 시설물 인수인계를 철저히 수행한 후 공단이 대행운영 토록 해야 할 것임

11) 암사1동 주차장 민간투자사업 운영종료에 따른 관리이행계획 수립('19.10.18~'20.12.17)

제6장 사회기반시설 유지 여부 판단 : 해당 시설을 주차장 시설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

- 해당 지역의 주차 수요 대비 공급 수준은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장애 불법주차 전환수요와 시설 폐지 시 주차장 공급을 위한 대안이 부재하여 현재와 같이 주차장 시설을 유지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

- 특히, 안전 분야에서 시설물 인수인계 전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유지관리 미흡 및 노후에 따른 시설 손상이 발견된 곳은 보수·보강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¹²⁾ 대행 전에 반드시 완료된 이후 공단에 인계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관리주체가 공단으로 이관될 경우 기존 부대시설의 임차인과의 계약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2¹³⁾에 따라 최초의 사용허가에 한해서만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허가 될 수 있음을 알리고 향후 계약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종합의견

- 암사1동 주차장은 ‘강동구 암사1동 473-3(고덕로 24길 50)’에 위치한 민자 주차장으로 ’02년 5월 준공 후 ’22년 5월 15일까지 20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고

12)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기간 만료 시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보수 범위를 공동점검을 통해 결정하고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수리 또는 보수하여 시설을 주무관청에 인계할 필요

1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2(주차전용건축물과 그 부대시설) ① 사용자 선정은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차장 외 용도의 시설 또는 부대시설의 경우 시가 인수한 후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초의 사용허가에 한하여 중전의 사용자(문서상 사용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한 자를 말한다)에게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허가는 각 점포(사무실 등 포함)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1인(법인 포함)이 사용허가 받을 수 있는 점포는 1개소로 한정한다

서울시는 동 동의안을 통해 협약에 따른 무상사용기간 만료 이후 동 주차장을 인수하여 운영 및 관리 업무를 공단에 대행코자 하는 것임

- 현재 공단이 서울시 공영주차장을 일괄 운영 중이고 민간위탁으로 추진된 민자주차장 20개소 중 위탁기간이 만료된 12개소도 공단이 대행하고 있으며

협약 만료 전 시행한 “관리이행계획”에서도 주변 수요와 주차장 공급 상황을 고려하여 동 주차장을 유지하는 것을 타당한 대안으로 선정한 바 있음

- 또한, 동 주차장은 3급지에 해당되고 기존 민간 운영시 보다 공단 대행시 주차요금이 낮아져¹⁴⁾ 이용시민에게 보다 나은 혜택이 돌아감을 감안할 때,

기존 사업자의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동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서울시가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는 것은 보다 전문적이고 원활한 주차시설 관리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동 동의안은 동 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이 만료 된 이후 조례에 명시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을 제출한 것¹⁵⁾으로

14) 암사1동 주차장 대행 전후 요금 비교

구분	요금		비고
	10분당 요금	월정기권	
대행 전(민간운영)	500원	120,000원	민간 요금
3급지 요금 기준	300원	100,000원	
대행 후(공단운영)	260원	90,000원	3급지 기준요금 90% 공시지가변수((해당법정동 평균공시지가 / 서울시평균공시지가)의 4제곱근)

이는 자칫 법적 근거를 무시한 행정행위로 비취질 소지가 있는 바,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는 사전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또한, 기 실시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나타난 노후시설의 보수·보강 조치는 협약 만료 전 사업자로부터 반드시 선행된 후 서울시에 인계되어야 할 것이며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부대시설 사업자¹⁶⁾와의 임대차 계약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끝으로, 동 주차장이 서울시로 인수되어 공단이 운영을 대행할 경우 공단은 적정 인력배치 및 시설물 개선 등 관련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주차장 운영·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15) 암사1동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 : 2002.5.16 ~ **2022.5.15.**

대행 동의안 제출 : **'22. 5. 25**, 본회의 의결(예정)시기 : **'22. 6. 21**

16) 지상1층 판매시설(홈플러스 암사점), 지하1층 체육시설(오케이 핑퐁)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

의안 번호	3208
----------	------

제출년월일 : 2022년 5월 2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 강동구 암사1동 주차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어 무상사용 기간(20년)이 종료('22.5월)됨에 따라 우리시로 반환되는 주차장임
- 나. 전문적인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서울시설공단에 주차장 관리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주차장명 : 암사1동 주차장
- 주 소 지 : 강동구 암사1동 473-3(고덕로 24길 50)
 - ※ 민자운영기간 : 2002.5.16.~2022.5.15.(20년)
- 시설규모 : 대지 995.4 m^2 , 연면적 3,385.27 m^2 (주차장 2,694.72/ 근생 690.55)
 - 주차구획 100면, 부대시설 2개소
- 주차요금(예정) : 130원 / 5분당, 월정기권 90,000원(3급지)



나. 주요 대행 업무

- 대행기관 : 서울시설공단
- 대행기간 : 4년7개월('22.5.16. ~ '26.12.31.)
 - ※ '21.12.31. 체결한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협약서 적용('22.1.1.~'26.12.31)
- 대행업무
 - 암사1동 공영주차장과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 주차장 및 부대시설의 안전관리, 유지관리 및 개보수

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암사1동 공영주차장은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수익추구 보다 시민들의 주차편익 등 공공기능 강화가 필요한 시설임
- 서울시설공단은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암사 1동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대행함으로써, 축적된 전문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 운영과 안전한 시설물 관리로 이용 활성화가 가능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0조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 제2항 및 제13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4. 전통시장인근 100m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0면 이하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② ~ ③ 생략

-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19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와 청소·경비·일상적 시설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22년 예산 반영

다. 합 의 : 해당 없음

※ 작성자 :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강영호(☎ 2133 - 2375)